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43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남인순・이수진・윤종군

박홍근 · 김남근 · 허종식

박희승 · 조정식 · 전용기

정성호 · 윤후덕 · 송옥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呆)"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치매"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 감대 역시 형성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법률 제 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퇴치"를 "인지저하증퇴치"로, "치매로"를 "인지저하증으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란"을 ""인지저하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로"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치매가"를 "인지저하증이"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에"를 "인지저하증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치매 관리사업수행기관""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인지저하증관리 전달체계""로, "치매관리에"를 "인지저하증관리에"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인지저하증 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인지저하증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인지저하증관리사업"이라한다)"으로, "치매를"을 "인지저하증을"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와 치매예방"을 "인지저하증과 인지저하증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 환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치매극복"을 "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를"을 "인지저하증 을"로, "치매극복"을 "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극복"을 "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저하 증관리위원회"로, "치매관리에"를 "인지저하증관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환자가족"을 "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인지저하증관리사업 및 인지저하증관리 전달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치매관리에"를 "인지저하증관리에"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국가치매관리"를 "국가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의 예방"을 "인지저하증의 예방"으로,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인지저하증 연구 ·개발 사업(이하 "인지저하증연구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 사업"이라 한다)"을 "인지저하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인지저하증검진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검 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 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검진"을 "인지저하 증검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 치료"를 "인지저하증 치료"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치매로의 진행"을 "인지저하증으로의 진행"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 관련 사업"을 "인지저하증 관련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치매실태조사"를 "인지저하증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에 관한 사업"을 "인지저하증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치매와"를 "인지저하증과"로 한다.

- 1. 인지저하증검진사업
- 5.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제16조의 제목 중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 4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 5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 7호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 은 항 제8호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0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 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하 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치매와"를 각각 "인지저하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치매센터"를 각각 "중앙인지저 하증센터"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의 예방"을 "인지저하증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0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 중 "광역치매센터"를 각각 "광역인지저하증센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의 진단"을 "인지저하증의 진단"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인지저하증 관련 의료서비스"로,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인지저하증 전문병동"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인지저하증 관련 의료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관리병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예방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인지저하

증관리센터(이하 "인지저하증관리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4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안심센터"를 각각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를 "인지저하증예방, 인지저하증환자 관리"로,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

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치매 관련 전문기관"을 "인지저하증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 광역인지저하증센터 및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제19조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치매관리법」에 따

- 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 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 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5조(치매정보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지저하 증정보시스템으로 본다.
- 제6조(중앙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인지저하증센 터로 본다.
- 제7조(광역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역치매센터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인지저하증 센터로 본다.
- 제8조(치매안심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지저하증관리

병원으로 본다.

- 제9조(치매안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지저하증관리센터로 본다.
- 제10조(치매상담전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 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본다.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지저하증"이란 「인지저하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지저하증을 말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인지저하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인지저하증관리센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지저하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인지저하증관리센터의 장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인지저하증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인지저하증관리법」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인지저하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인지저하증환자

⑤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인지저하증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지저하증정보 시스템
- 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한다.

⑧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인지저하증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지저하증정보 시스템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치매관리법 인지저하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 제1조(목적) -----인지저하증의 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 ----인지저하증환자-----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인지저하증퇴치-----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u>인</u>지저하증 수립 ·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 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 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 1. "인지저하증"이란----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 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 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 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 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2. "인지저하증환자"----인지저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하증으로-----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

- 터 <u>치매로</u>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 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 어 <u>치매가</u> 아닌 상태를 말한 다.
- 4. <u>"치매관리"</u>란 <u>치매의</u> 예방과 <u>치매환자</u>에 대한 보호·지원 및 <u>치매에</u>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 나. 제16조의2의광역치매센<u>터</u>
 - 다. (생략)
 - 라. 제16조의4의 <u>치매안심병</u> 원
 -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 바. 제3조제1항의 <u>치매관리사</u> 바. -----<u>인지저하증</u>

	<u>인지저하증으로</u>
3.	
	<u>인지저하증이</u>
4.	 <u>"인지저하증관리"</u> <u>인지저</u>
	<u>하증의인지저하증환자</u> -
	<u>인지저하증에</u>
5.	
	<u>관"</u>
	가 <u>중앙인지저하증</u>
	<u>센터</u> 나광역인지저
	·· <u> </u>
	다. (현행과 같음)
	라인지저하증
	관리병원
	마인지저하증관리
	<u>센터</u>

<u>업</u>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u>치매관</u>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u>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u>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매관리에 관</u>
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
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
로써 <u>치매를</u> 예방하고 <u>치매환</u>
<u>자</u>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u> <u>매환자</u>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u> <u>매와 치매예방</u>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u> 관리사업</u>
6. "인지저하증관리 전달체계"-
인지저
하증관리에
인

<u>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u>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u>인지저하증관</u>
리에 관한 사업(이하 "인지저
하증관리사업"이라 한다)
<u>인지저하증을</u> <u>인지저</u>
<u>하증환자</u>
<u>.</u>
② <u>인</u>
지저하증환자
(3)
_ <u></u>
지저하증과 인지저하증예방
4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 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u>치매관리사업</u>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치매</u> 관리 및 <u>치매환자</u>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5조(<u>치매극복</u>의 날) ① <u>치매관</u> 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u>치</u> <u>매를</u>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 년 9월 21일을 <u>치매극복</u>의 날 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치</u> <u>매극복</u>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u>치매관리종합계획</u>의 수립 •시행 등

제6조(<u>치매관리종합계획</u>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 조에 따른 <u>국가치매관리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

-	
_	인지저하증관리사
C	<u> </u>
	요
<u>-</u>	~~~~~~~~~~~~~~~~~~~~~~~~~~~~~~~~~~~~~
_	
_	
-	
-	
	5조(<u>인지저하증극복</u> 의 날) ①
	<u>인지저하증관리인</u>
_	<u>지저하증을</u>
-	이 기 기 귀
-	<u>인지저하</u> 중극복
	<u>0 7 7</u> · · · · · · · · · · · · · · · · ·
,	의 <u>-</u> 지저하증극복
-	
-	
제	2장 <u>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u>
	의 수립·시행 등
제(G조(<u>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u> 의
٤	수립 등) ①
-	
_	위원회인지저하증관리

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u>치매</u>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2. <u>치매검진사업</u>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u>치매환자</u>의 치료·보호 및 관리
- 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
- 5. <u>치매</u>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 6. <u>치매관리</u>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7. <u>치매환자가족</u>에 대한 지원
- 8. <u>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u>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9. 그 밖에 <u>치매관리</u>에 필요한 사항
- ③ (생 략)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u>에</u>
<u>.</u>
②
1. <u>인지저하증</u>
2. 인지저하증검진사업
0 시기기기 기 지 귀 기
3. <u>인지저하증환자</u>
4. <u>인지저하증</u>
4. <u>리시시이 6</u> 5. 인지저하증
6. 인지저하증관리
7. 인지저하증환자가족
8. 인지저하증관리사업 및 인지
저하증관리 전달체계
9 <u>인지저하증관리</u>
③ (현행과 같음)
4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u>치</u> <u>매관리에</u>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u>치매관리에</u>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소속으로 <u>국가치매관리</u>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 ③ 위원은 <u>치매</u>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④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u>국가치매관리</u> 체계 및 제도 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 3. (생략)
 - 4. <u>치매관리사업</u>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

<u> 저하증관리</u>	-
	<u>)</u>
<u>인지저하증관리에</u>	-
<u>국기</u> 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	_
③ <u>인지저하증</u>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회의 기능) 1. <u>국가인지저하증관리</u>	
	_

റി ചി

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u>(치매연구사업)</u> ① 보건복 기기부장관은 <u>치매의 예방</u>과 진 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 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 ② <u>치매연구사업</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u>치매환자</u>의 관리에 관한 표 준지침의 연구
- 2. <u>치매</u>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3. (생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연구</u> 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 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연구</u>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u>인지저하증연구사업</u> 등
제10조(인지저하증연구사업) ① -
인지저하증의 예방
<u>인지</u>
저하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인지저하증연구사업"이라 한
<u>다)</u>
② 인지저하증연구사업
1. <u>인지저하증환자</u>
2. <u>인지저하증</u>
3. (현행과 같음) ③이지저하
③ <u>인지저하</u> 증연구사업
<u> </u>
· ④인지저하
<u> </u>
<u> </u>
<u>.</u>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단체로 하여금 <u>치매연구사업을</u>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⑥ <u>치매연구사업</u>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 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u>치매검진사업</u>의 범위, 대상 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u>치매검진</u>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⑤
인지저하증연구
사업
⑥ 인지저하증연구사업
제11조(인지저하증검진사업) ① -
인지저하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지사업(이하 "인지저하증검
진사업"이라 한다)
② <u>인지저하증검진사업</u>
③ 인지저하증
④ <u>인지저하증검진</u>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u>치매환자</u>의 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u>치매환자</u>의 경제적 부담능 력을 고려하여 <u>치매 치료</u>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의2(<u>치매환자</u>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u>치매환자</u>의 가족을 위한 상 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치매</u>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 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u>인지저하증환자</u> 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u>인지저하증환자</u>
인지저하증 치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인지저하증환자의 가
족지원 사업) ①
<u>인지저하증환자</u>
<u>.</u>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인지
 저하증환자

- 1. (생략)
- 2. <u>치매환자</u>의 권리를 적절하게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3. (생략)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치매</u>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받은 사람에 대하여 <u>치매로의진행</u>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u>치매의</u>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 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1. (현행과 같음)
	2. 인지저하증환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인지</u>
	<u> 저하증환자</u>
	④·⑤ (현행과 같음)
제	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 'II	
	지원사업) ①
	인지저하증
	 으로의 진행
	② (현행과 같음)
제	13조(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	①인지저하증의
	①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이하 "<u>치매등록통계사업</u>"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등록</u> <u>통계사업</u>과 관련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u>치매정보시스템</u>의 구 조 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 관련 사업</u>과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치매정보시스템</u>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인지저하증등록통계
사업
 ②인지저하
증등록통계사업
세13조의2(<u>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u>
의 구축・운영) ①
인지저하증 관련 사업-
인지저하증관리센터
이기저차즈저버시스테
<u>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역학조시	())	보건복	부지부
장관은	<u> 치매</u>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역학조	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의2(<u>치매실태조사</u>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u>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u>치매환자</u>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u>치매에관한 사업을</u>하는 법인·단체

제14조(역학조사) ①
인지저하증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u>인지저하증실태조사</u> 의
실시) ①인지저
하증
0 8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
인지저하증환자
۱ - ۱ - ۱
<u>인지저</u>
<u>하증에 관한 사업</u>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치매검진사업
- 제12조에 따른 <u>치매환자</u>의
 의료비 지원사업
- 3. 제12조의2에 따른 <u>치매환자</u> 의 가족지원 사업
- 4. (생략)
- 5. 치매등록통계사업
- 6. 제13조의2에 따른 <u>치매정보</u>시스템의 구축・운영
- 7. (생략)
- 8.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

 의 업무
- 9. 그 밖에 <u>치매와</u>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 ④ (생 략)

제16조(<u>중앙치매센터</u>의 설치) ① 제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관리</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1. 인지저하증검진	<u> 사업</u>
2	인지저하증환
자	
3	<u>인지저하</u>
<u> 증환자</u>	
4. (현행과 같음)	
5. 인지저하증등록	통계사업
6	<u>인지저하</u>
증정보시스템	
7. (현행과 같음)	
8	인지저하증관
리센터	
9인지저	<u>하증과</u>
② ~ ④ (현행과	
]16조(<u>중앙인지저하</u>	증센터의 설
치) ①	<u>인지저하증</u>
관리	

행하게	하기	위하여	<u>중</u>	앙치매
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3. (생략)
- 4. 치매연구사업 지원
- 5. <u>치매관리사업</u>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6. (생략)
-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 8. 제13조의2에 따른 <u>치매정보</u> <u>시스템</u>의 구축·운영의 지원
- 9. (생략)
- 10.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u>터 업무의 지원
- 11. <u>치매</u> 인식개선 교육 및 홍 보
- 12. <u>치매</u> 관련 정보의 수집·분 석 및 제공
- 13. <u>치매와</u> 관련된 국내외 협력
- 14. 그 밖에 <u>치매와</u>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

중앙인지
<u> 저하증센터</u>
1. 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
_
2. 인지저하증관리
3. (현행과 같음)
4. 인지저하증연구사업
5. 인지저하증관리사업
6. (현행과 같음)
7.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8 <u>인지저하</u>
증정보시스템
9. (현행과 같음)
10 <u>인지저하증</u>
관리센터
11. <u>인지저하증</u>
12. <u>인지저하증</u>
13. <u>인지저하증과</u>
14 <u>인지저하증과</u>
2
중앙인지저하증센터

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 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u>중앙치매센터</u>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u>광역치매센터</u>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u>치매관리</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u>광역치매센</u>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치매관리사업 계획
- 2. 치매 연구
- 3.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4. <u>치매</u>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5. <u>치매</u>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6. <u>치매환자</u> 및 가족에 대한 <u>치</u> 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41 41 1 3 51
3	
<u> 증센터</u>	
제16조의2(<u>광역인지</u>	
설치) ①	
관리	
	<u>광역인지저</u>
<u>하증센터</u>	
1. 인지저하증관리	사업
2. <u>인지저하증</u>	
3	-인지저하증관
리센터	
4. <u>인지저하증</u>	
5. <u>인지저하증</u>	
	-
6. 인지저하증환지	<u>୍ର</u>
지저하증의 예빙	 -

- 7. <u>치매</u>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9. (생 략)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u>광역치매센터</u>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u>치매</u>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u>인지저하증</u>
8.・9. (현행과 같음)
10
<u>인지저하증</u>
②
광역인지저하증센터
③ <u>광역인지저하</u>
<u> 증센터</u>
<u>.</u>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지저하증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u>치매안심병원</u> 의 지정)	제16조의4(인지저하증관리병원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의</u>	지정) ① <u>인지저</u>
<u>진단</u> 과 치료·요양 등 <u>치매 관</u>	<u> 하증의 진단인지저</u>
<u>련</u>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하증 관련 의료서비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u>치매</u>	<u>인</u> 지
<u>안심병원</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하증관리병원
② <u>치매안심병원</u> 으로 지정받으	② 인지저하증관리병원
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	<u>.</u>
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	
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	
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	<u>.</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치매안심</u>	인지저하
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증관리병원 - 인지저하증전문병
운영하거나 <u>치매 관련 의료서</u>	<u>동-</u> 인지저하증 관련 의
<u>비스</u> 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료서비스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	
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④ 인지저하증관리병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u>치매</u>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⑤ <u>치매안심병원</u>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u>치매안심센터</u>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u>치매예방과 치매환자</u> 및 그 가 즉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u>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u>를 설치한다.
 - ② <u>치매안심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u>치매</u>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2.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 3. <u>치매등록통계사업</u>의 지원
 - 4.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 5. <u>치매환자</u>를 위한 단기쉼터의운영
 - 6. <u>치매환자</u>의 가족지원사업6의2. · 6의3. (생 략)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u>인</u> 지
저하증 관련 의료서비스
⑤ 인지저하증관리병원
제17조(<u>인지저하증관리센터</u> 의 설 치) ①
인지저하증예방과 인지저하증
<u>환자</u>
-인지저하증관리센터(이하 "인
지저하증관리센터"라 한다)
② <u>인지저하증관리센터-</u>
· 1. <u>인지저하증</u>
2. 인지저하증환자
3.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4. <u>인지저하증</u>
5. <u>인지저하증환자</u>
 C 이기기의조치기
6. <u>인지저하증환자</u>
6의2.·6의3. (현행과 같음)
6의4. <u>인지저하증</u>

홍보

-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이 <u>치매관리</u>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 ③ <u>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u> <u>안심센터에 치매환자</u>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 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 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 ④ <u>치매안심센터</u>의 시설·인력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u>치매상담전화센터</u>의 저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u> 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치</u> 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있다.
 - ② <u>치매상담전화센터</u>는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u>치매</u>에 관한 정보제공

7
- <u>인지저하증관리</u>
③ 인지저하증관리센터
인지저하증관리센터 - 인지저하
증환자
· ④ 인지저하증관리센터
<u> </u>
 네17조의2(<u>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u>
<u> 터</u> 의 설치) ①인
지저하증예방, 인지저하증환자
<u>관리</u>
<u>ণ</u>
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②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1 인지저하증

- 2. <u>치매환자</u>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 최대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에 관한 정보제공
- 4. <u>치매환자</u>의 가족에 대한 심 리적 상담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치매</u> 관 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치매상담전화센터</u>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u>치매 관련 전문기관</u>·법인·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u>치매상담전화</u>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 지방자치단체는 <u>치매관리사업</u>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u>인지저하증환자</u>
3. <u>인지저하증환자</u>
4. <u>인지저하증환자</u>
 5 <u>인지저하</u> <u>중</u>
③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인지저하증 관 런 전문기관
 ④ <u>인지저하증상</u> <u>담전화센터</u>

- 1. 제10조에 따른 <u>치매연구사</u> 업, 제11조에 따른 <u>치매검진</u> 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u>치매</u> 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 조에 따른 <u>치매등록통계사업</u>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
 17조에 따른 <u>중앙치매센터,</u>
 <u>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u>
 <u>터</u>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u>치매상</u> <u>담전화센터</u>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2. <u>치매관리사업</u>에 대한 교육· 홍보에 드는 비용
- 3. <u>치매관리사업</u>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 용
- 4. <u>치매관리사업</u>을 수행하는 법 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 업에 드는 비용
- ② (생략)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제 따라 <u>치매관리사업</u>에 종사하거 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

1.	인지저하증연
	<u> 구사업인지저하</u>
	<u> 증검진사업인지</u>
	<u> 저하증환자</u>
	<u>인지저하증등록</u>
	통계사업
1.	의2
	중앙인지저하증
	센터, 광역인지저하증센터 및
	인지저하증관리센터
1.	의3인지저
	하증상담전화센터
2.	인지저하증관리사업
3.	인지저하증관리사업
4.	인지저하증관리사업
2) (현행과 같음)
19	9조(비밀누설의 금지)
_	<u>인지저하증관리사업</u>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	2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u>치매관리사업</u> 을 수행할	-인지저하증관리사업
수 있는 법인 ·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시행할 수 있다.	